

제2577호
2018. 05. 02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 관 의 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8-47호 :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	2
제2018-48호 : 남대문구역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	5
제2018-49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	7
제2018-50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	8

● 공 고

제2018-326 : 2018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	9
--	---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47호

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목 적

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사 업 명 : 마른내로 일대 간판개선사업

3. 위치 및 규모

○ 마른내로 일대 구간 점포 114개점포

※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

4. 사업내용 :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

5. 사업기간 : 2018년 3월 ~ 2018년 12월까지

6. 사업방법 :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

7. 소요예산 : 285,000천원(옥외광고정비기금)

-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,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
-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
-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
-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

8. 추진내용

-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
-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,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·설치

- 간판개선·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
 -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, 점포주, 전문가 등으로「간판개선 주민위원회」구성·운영
 -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
 -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(불법간판 신고 등)

9.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

구 분	간 판 설 치 기 준
총 수량	○ 간판수량 : 1업소 1간판 ※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. 1면의 면적이 0.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.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(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) 2.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.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
벽면형 간 판	○ 표시형태 : 판류형 또는 입체형 ○ 설치위치 : 3층 이하 정면 ○ 표시규격 ▶ 가로 :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% 이내(최대 10m 이내) ▶ 세로 : 판류형 80cm 이내, 입체형 45cm 이내
창문이용 광고물	○ 3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,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쪽 폭 30cm이하 ○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건물 2층 이하 자사광고에 한정, 크기는 해당 유리벽·창문·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 ○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○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, 세로 폭 45cm, 길이 3m, 창문면적 1/4 이내
기 타 준수사항	○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○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(KS 인증제품)으로 하고 절전용 on-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○ 검정 또는 빨강(주황, 핑크 포함),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○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(외벽 보수, 청소등)

※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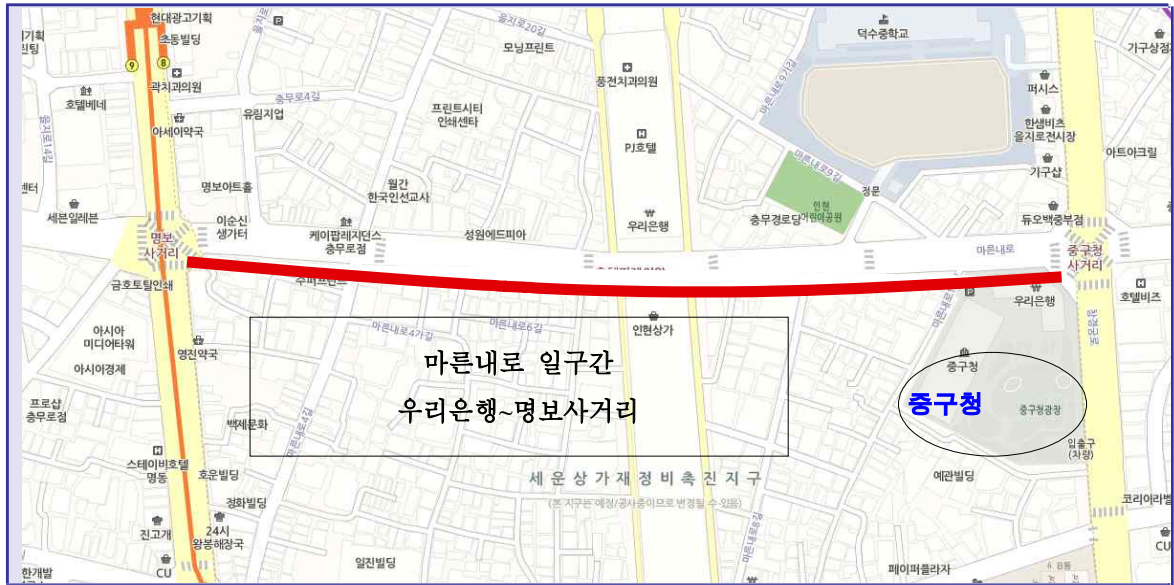
10. 허가 및 신고

-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.
- 단,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㎡ 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.

11. 광고물 등의 심의

- 광고물 등의 규격, 위치, 색깔,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.

12.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

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.
3. (기타사항)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48호

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35호(2018.04.1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남대문구역 제7-2, 9-2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남대문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

1) 남대문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: 변경없음

2)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: 변경없음

3)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
4)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설치계획

가) 도 로 : 변경없음

나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계획(도로)

◎ 정정 전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기 정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 155호 (2012.0 6.14.)	주1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8m~14m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하2m초과, 지상8m~14m초과 비도시계획시설		
				면적(m ²)	547.1m ²		
변경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 155호 (2012.0 6.14.)	주2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5.9m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하2m초과, 지상5.9m초과 비도시계획시설		
				면적(m ²)	549.5m ²		

주1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9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2m(평균해수면 34.97m~40.97m) ~ 지상8m~14m(평균해수면 50.8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주2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7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2m(평균해수면 34.97m~40.77m) ~ 지상5.9m(평균해수면 42.7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◎ 정정 후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 명	위 치	구분	기 정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 (변경 없음)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155 호 (2012.06.1 4.)	주1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8m~14m 지하2m초과, 지상8m~14m초과		
				면적(m ²)	547.1m ²		

주1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9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약2m(평균해수면 34.97m~40.97m) ~ 지상8m~14m(평균해수면 50.8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5)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6)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: 변경없음

7) 건축시설계획(변경) : 변경 없음

2. 정정사유

-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35호(2018.04.11.) 고시된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인 소로1-a의 입체도로 조서 중 높이의 착오기재(변경사항 없음)에 대한 정정임

3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8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49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-13	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36	2018.05.02.	명동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명동길을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50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-13	2018.05.02.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-15	2018.05.02.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	2018.05.02.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326호

2018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18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8년 4월 3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개별주택가격 공시

- 가. 공시(가격)기준일 : 2018. 1. 1. 기준
- 나. 개별주택수 : 5,312호
(단독주택 2,491호, 다가구 850호, 다중 6호, 주상용 1,802호, 기타 163호)
- 다. 공시사항 : 개별주택의 소재지, 면적, 가격등
- 라. 열람방법 및 장소 :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,
일사판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(<http://kras.seoul.go.kr>)

2. 이의신청방법

- 가. 2018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
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.
- 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6조 별지 제17호
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(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, 세무1과,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)에 작성하여 우편·방문
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.

[국토교통부공고제2018-246호]

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8년 4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18년 1월 1일

나. 공동주택수 : 12,889,856호

(아파트 10,301,164호, 연립 500,196호, 다세대 2,088,496호)

다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
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)

라. 열람방법 및 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
소재지 관할 시군구청(또는 읍면동) 민원실

2. 이의신청방법

가.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
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, 시군구청(또는 읍면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.